

제한차량 운행허가([] 신규 [] 변경)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차량 형식 (①참조)	자동차	(차량)등록번호
	건설기계	

차고지	주소
-----	----

차량 제원 (①참조)	축수	가장 먼 축간거리	규격			중량		
			폭	높이	길이	차량중량	최대적재량	차량총중량
	축	mm	mm	mm	mm	톤	톤	톤

허가신청 제원 (②참조)	규격			중량	
	폭	높이	길이	최대 축하중	차량총중량
	mm	mm	mm	톤	톤

※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.

화물	종류	제원/중량
----	----	-------

차량운행	운행목적	운행기간
	운행방법	

운행경로 (구간)	출발지	도착지	총연장	
	→	→	→	→
	→	→	→	→
	→	→	→	→

※ 노선명,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.(예: 국도○호선, 지명 등)

변경 경위	구분	허가 연월일	허가번호	변경내용
	제1회			
	제2회			
	제3회			

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도로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 및 처리절차	뒤쪽 참조	수수료 5,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-------------	-------	--

서류명	신청구분	
	신규 신청	변경 신청
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	1부	1부
② 차량 중량표	1부	-
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• 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•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(필요 시)	(N)부 (N)부	-

첨부서류

- (N)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(기관)의 개수입니다.
-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,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,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, ②,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,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차량 중량표(②)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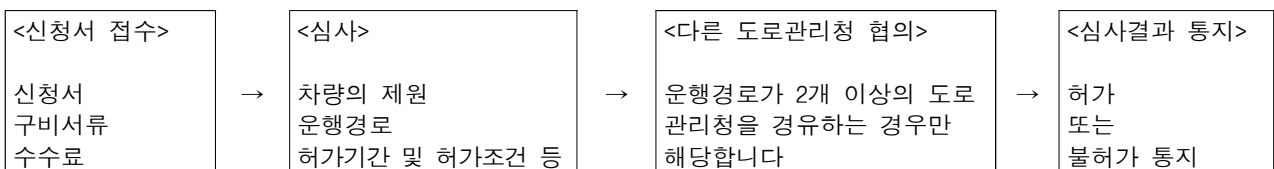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※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.